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, 공공기관이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가정보원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6. 23. ~ 8. 0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제26호까지 및 제28호”를 “제26호까지, 제28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국가보안시설”로, “제외한다”를 “제외하며,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이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의4제1항제2호 중 “과업지시서”를 “과업이행요청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)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(이하 “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	제17조(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3호의2,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	1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제26호까지, 제28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국가보안시설----- 제외하며,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이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4(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	제19조의4(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

기능)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“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설계용역 <u>과업지시서</u>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. (생략) ② (생략)	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과업이행요청서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82